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

1. 소집일시: 2026년 3월 26일(목) 오전 9시
2. 소집장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번길 13-30
에스피지연구소 6층 대강당
3. 회의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
① 감사의 감사보고
② 영업보고
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: 제35기(2025.1.1.~2025.12.31.)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포함)
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- 현금 배당금 : 보통주 1주당 150원
- 배 당 총 액 : 3,326,604,000원

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**<별첨1, 신구조문대비표>**

제3호 의안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- 제 3-1호 의안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(이준호), (최대주주 이준호 지분 제외)
- 제 3-2호 의안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(여영길, 박연우), (사내이사 여영길 지분 제외)

제4호 의안: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
2026년 3월 4일

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289번길 45
주식회사 에 스 피 지
대표이사 이준호, 여영길 (직인생략)

<별첨1, 신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	개정이유
제24조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과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 <신설>	**제24조(소집지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	**상법 제542조의14, 제542조의 15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.**
제30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, ② (생략)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	**제30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** ①, ② (현행과 같음)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**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.**
제34조(이사의 수)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로 한다.	**제34조(이사의 수)**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,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되,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**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 반영.**
제40조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 <제2항 신설, 기존 제2항, 제3항, 제4항 항번호 변경>	**제40조(이사의 의무)**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 ③ ~ ⑤(현행과 같음)	**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 반영.**
제40조의 2(이사의 책임감경)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**제40조의 2(이사의 책임감경)**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독립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**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개정내용을 반영.**

현 행	개 정	개정이유
	부 칙 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**제2조(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)** 제24조,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**제3조(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)**① 제34조,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<법률 제20991호, 2025. 7. 22.>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	**[부칙신설]** - **전자주주총회 및 대리권 증명과 관련된 조항의 시행시기를 부칙에 반영함.** - **상법 제542조의8 등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의 개정시기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며(제1항), 독립이사 구성요건 강화에 대한 상법의 경과규정을 반영함(제2항).**